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0년 10월 14일 (수) · 주간제 42호 · 통권 제 1488호 ·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 구독료 월 30000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0/ 10/ 14 통권 1488호

## CEO 에세이 – 이해악원장

경영은 전문경영인에 맡겨라

##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 경영관리임직원 째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주택 이외 일반 부동산의 대도시내 취득과 사치성재산의 취득세 중과세율 계산(행안부 요약)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는 간이영수증이 적법 증빙으로 인정됨
-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견 분석 및 시사점
-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
-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특정 결손법인의 직접주주가 아닌 갑의 특수관계인이 결손법인에게 자산증여해도 을과 갑 간에 증여세 과세안됨 (p.13)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지난 한가위 추석 명절에 임직원과 고객에 보내준 선물구입비용 · 자기 생산재화의 회계처리와 세금차이 >

개념구분, 목적	부가가치세(매출매입)	회계처리, 비용, 손금산입여부
외부구입	임직원용 (복리후생비)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됨
	거래처용 (불특정소액)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 매입세액공제 가능
	거래처용 (특정고객)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10% 비용)
자기생산	임직원 경조사용	매출부가세 없음(0)
	고객증여 경품 등	매출부가세 과세(10%)
	고객 견본품	매출부가세 없음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488 호 / 주간 42호

2020. 10. 14. (수)

- 발행인 : 이윤선
- 제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 · 수도권 · 경기 · 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 · 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 · 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 · 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 · 안산  
전화: 010) 5255-6116

### ♣ 매월 구독 · 자문료 5만원

-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족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 · 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전문
- ⑩ 세무 · 회계 · 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한가위 추석 명절에 임직원과 고객에 보내주는 선물구입비용 · 자기생산재화의 회계처리 · 세금차이	표지
긴급 시사해설	주택 이외 일반 부동산의 대도시내 취득과 사치성재산의 취득세 종과 세율 계산(행안부 요약)	2
C E O 에세이	경영은 전문경영인에 맡겨라	3
세무 · 회계 상담자문 (님들은 무슨 고민할까?)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동일과세기간에 1회에 한하여 공제함 -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됨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됨 - 보상차원으로 받는 금전은 매출이 아니고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함	5
눈에 맞는 절세미인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는 간이영수증이 적법증빙으로 인정됨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주택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유불리 - 연금 수령액 과세기준	9 10
직장인 Survival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특정법인(결손법인)에 직접보유주식이 없는 개인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개인주주가 간접적인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5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 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2319, 2020.03.03)	12 13
세정뉴스와해설	노력해도 납부 못 하는 생계형 체납자… 징수유예 신청 가능	14
마케팅 Tax consulting	특정 결손법인의 직접주주가 아닌 갑의 특수관계인이 결손법인에게 자산증여해도 읊과 갑 간에 증여세 과세안됨	12
회계정보	-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15
세무정보	-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 · 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	22 31
노무정보	-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41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을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 재정환율	21

# 주택 이외 일반 부동산의 대도시내 취득과 사치성재산의 취득세 중과세율 계산 (행안부 요약)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희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중과세대상(지방세법 제13조)		중과세율 계산방법
과밀 억제권 (수도권)	①항-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증가)	- 건물신축 : $2.8\% + (2\% \times 2\text{배}) = 6.8\%$ - 토지취득 : $4\% + (2\% \times 2\text{배}) = 8\%$
	①항-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증가)	- 공장신축 : $2.8\% + (2\% + 2\text{배}) = 6.8\%$ - 토지취득 : $4\% (2\% \times 2\text{배}) = 8\%$
대도시 내 법인 (산업 단지는 제외)	②항-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기본세율 $2.8\% \times 3\text{배} - (2\% \times 2\text{배}) = 4.4\%$ (기본율에 근접) - 토지취득 : $4\% \times 3\text{배} - (2\% \times 2\text{배}) = 8\%$
	②항-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 \times 3\text{배} - (2\% \times 2\text{배}) = 4.4\%$ (기본율에 근접) - 토지취득 : $4\% \times 3\text{배} - (2\% \times 2\text{배}) = 8\%$
	①항 및 ②항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 법인설립 후 5년내 본점 신축)	- 건물신축 : 표준세율( $2.8\% \times 3\text{배}$ ) = 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 $4\% \times 3\text{배}$ ) = 12%
사치성 재산	⑤항-1. 별장, ⑤-2. 골프장, ⑤-3. 고급주택, ⑤-4. 고급오락장, ⑤-5. 고급선박	- 건물신축 : $2.8\% + (2\% \times 4\text{배}) = 10.8\%$ - 토지취득 : $4\% + (2\% \times 4\text{배}) = 12\%$ - 고급주택취득 : $2-3\% + (2\% \times 4\text{배}) = 10-11\%$
	②항과 ③항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표준세율( $4\% \times 3\text{배}$ ) + 중과기준세율( $2\% \times 2\text{배}$ ) = 16%
	법인 :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⑤ 항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중과세율( $8\sim12\%$ ) + 중과기준세율( $2\% \times 4\text{배}$ ) = 16~20%

# 경영은 전문경영인에 맡겨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출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윤수 (Fila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몇 년 전부터 필자는 연봉 18억원(물론 해가 가면서 더 늘었지만)을 받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당연히 필자를 고용한 기업의 소유자들, 즉 주주들은 그만한 연봉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냉철한 평가가 있었다.

전문 경영자는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기대한 만큼 또 그 이상으로 결실을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휠라 코리아의 사랑으로 취임한 91년이래 계속 필자의 연봉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주주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주들은 결실, 즉 주식투자에 대한 배당이 윤과 기업가치의 증대가 관심사항이다. 경영은 경영자의 뜻이지 결코 주주의 뜻이 아니다. 경영자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새로운 경영자를 선택하면 된다.

환자의 배 째기를 밥먹듯 하는 외과 명의로 불리우는 필자의 친지가 있다. 그는 끝내 수술에 끼지도 못한다는 맹장 수술조차 자기 딸에게는 못하고 동료 의사에게 맡겼다. 아무리 명의라 하더라도 자기 딸에게는 과욕과 불안이 교차했던 모양이다. 마땅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기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역할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다.

"아마 내가 한국 회사에서 일했다면 어느 누구도 연봉 18억원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회사가 있었다면 모두들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필자가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아마 전문 경영인이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다고 해도 우리 자본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회사가 잘 된 것은 당신 혼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조직이 밀반침해 주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줄을 서 있다."

경제 원론에 입각해 보면 기업의 구성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사람과 자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사람의 가치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동일체적 현상이 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런 구조로 문제를 품고 있다. 재벌의 오너가 무엇인가. 제왕과 마찬가지다. 독단과 탐욕과 아집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 당연히 기업의 전문적 경영이 불가능하다. 한보그룹 총회장이란 별난 명칭의 정태수씨 말처럼 "머슴"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대마불사의 신화가 속속 무너지는 현상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음미해 보아야 한다. 더구나 재벌 2세, 3세에게 소유의 변칙적 증여, 상속은 물론 경영권까지 물려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권좌를 물려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제왕처럼 전권을 휘두르는 반면 책임은 전혀 지지도 않는 게 보통이다. 기업에 무슨 꼬투리 걸릴 경우에도 제왕인 오너 대신 대부분 월급쟁이 전문 경영자가 겸찰에 오가곤 했다. 또한 재벌들이 비지니스 자체를 통해서 돈을 번 적이 거의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특혜 혁자를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다. 이를 되풀이하여 둉치만 키워 왔다. 그러기에 경기불황이나 IMF 치하에서 생존할 만한 체력이 없게 마련이다.

미래의 기업경영은 전문성에 위해 시간과 공간과 정보를 요리하는 것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 (Time-Based Management). 어디에서 어느 곳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가의 문제 (Space-Based Management). 홍수같이 몰려드는 정보의 가공과 이용 능력 (Information-Based Management) 등이 경영이다.

결코 소유와 경영의 동일체적, 세습적인 제왕의 노름이 아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동일과세기간에 1회에 한하여 공제함

**Q**

동일과세기간 내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방법에서 MAX(1, 2)

1.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2.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상기 계산결과 1번으로 계산되어져야 하나 의문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1) 두개의 자산 중 기본공제 250만원은 순차적으로 먼저 매도한 자산에만 250만원을 공제해서 계산하고 두번째 자산은 기본공제(250만원)없이 각각의 세율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인지요? 아님 각각 기본공제 후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인지요?

질문2) 만약 먼저매도한 자산에만 기본공제해야 한다면 먼저 매도한 자산의 양도차액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어떻게 두번째 매도자산에는 기본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A**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② 주식 및 출자지분 등의 자산의 종류 별로 동일한 과세기간(1.1.~12.31.)에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됨

**Q**

1. 당사는 B업체에게 관세환급에대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 이 경우 B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없는 데 어떻게 신고 하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자화 공급후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당연히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증빙서류로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됨

Q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자가 상시근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문의1)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해당되는 계약직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건가요?

문의2)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며 입사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기근로자에 포함되는건가요?

A

1. "1년 이상"에는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보상차원으로 받는 금전은 매출이 아니고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함

Q

납품처로부터 투자금액에 대해 납품단가로 인정되어 매월회수중인데

납품수량이 당초계획보다 미달되어 이에대한 보상차원의 생산차질비로 돈회수되었는데

매출계산서 없이 금액만 회수시 매출로 인식하여 잡을수 있는지요?

A

보상차원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성이 없으므로 매출(수익)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는 간이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별다른 고민 없이 지출처리를 했던 소액의 거래들에 대해서도 지출증빙 입수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액거래들 중 주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유료도로 통행요금이나 통행카드 충전비용의 증빙수취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유료도로 통행료는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없다

법인의 대부분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법인이기에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통해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출장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카드를 충전하거나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애매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행요금(통행카드충전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이 아닌 일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에 대해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통행료에 대해서는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만 잘 챙겨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받지도 않는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데, 업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통행료를 지급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한국도로공사에 지급하는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가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 과세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용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이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비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제외) 할 수 있다.

이 때 도로 및 관련 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으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별도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 서면3팀-1553, 2005.09.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 서삼46015-11350, 2003.08.23)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 영수증에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을 별도 기록관리하여 월합계 또는 1억원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365

## 매일 절세 재무 요점

- 안전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주택 공동 명의 VS 단독 명의 유불리

취득시	취득세	차이 없음	
	증여세	단독 → 공동 변경, 10년간 초과 증여 시 '과세'	
보유시	재산세	차이 없음	
	종부세	공동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별 6억 원 총 12억원 공제</li> <li>- 다주택자 고율 적용될 수 있음</li> <li>-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불가</li> </ul>
임대소득세	공동시 소득 분산돼 낮은 세율 적용될 수 있음		
	건강보험료	공동 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음	
처분시	양도세	공동 시 소득 분산되어 낮은 세율 적용 가능함	



### IRP 상세 내용

가입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퇴직금 수령자 등
세액공제	납입금액 최대 700만원(연금저축계좌 한도 합산)
운용가능상품	정기예금, 주식/채권형 펀드, 국내/해외 펀드, 대체 투자 등
연금 수령	만 55세 & 신규일로부터 5년 경과 시 10년 이상 수령
증도인출	법으로 인정된 사유만 가능
원금 보장	정기예금 등과 같은 예금자보호 자산에 한해 보장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금 비보장



## 연금 수령액 과세기준

인출 순서 적용	연금 수령 시 세부담	연금 외 수령 시 세부담
1.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	비과세
2. 퇴직일시금 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소득세를 30% 할인한 금액 기준으로 수령금액 비율로 분할 납부 (연금 수령 후 10년 경과시부터 40% 적용됨)</li> <li>분리과세로 종결(종합소득 합산 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소득세를 수령액 비율로 일시에 납부</li> <li>분리과세로 종결 (종합소득 합산 X)</li> </ul>
3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은 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령액의 5.5% 납부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li> <li>수령액이 인당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 6.6~46.2% 세율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령액의 16.5% 납부</li> <li>분리과세로 종결 (종합소득 합산 X)</li> </ul>



## 소득세법 세율 및 과세 산식

근로소득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72만원+(과세표준-1200만원) ×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과세표준-46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35%	1590만원+(과세표준-8800만원) × 35%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9460만원+(과세표준-3억원) ×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9460만원+(과세표준-3억원) × 40%
5억원 초과	42%	1억 7460만원+(과세표준-5억원) × 42%



##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기업으로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없으면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면 구체적인 실행도 어렵게 됩니다. 목표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하루 종일 바쁘기만 할 뿐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계획은 성공하는 데 더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목표는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만 이를 위해 분명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일은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의 속성을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일을 처리할 때 서로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일을 처리할 때 ①긴급하고 중요한 일, ②중요하지는 않으나 긴급한 일, ③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④긴급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일 순서로 처리합니다.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즉, '중요한 일'보다는 '긴급한 일'에 업무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반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간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①긴급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일, ②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잘 대응하고, ③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줄이고, ④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 일은 적극적으로 피합니다. 일의 경증을 따져 하찮은 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최신판례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특정 결손법인의 직접주주가 아닌 주주 갑의 특수관계인이 결손법인에게 자산증여해도 을과 갑 간에 증여세 과세안됨

**특정법인(결손법인)에 직접보유주식이 없는 개인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개인주주가 간접적인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전법령재산-46, 2020.02.27

### | 질의

- 특정법인(결손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신청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신청인의父)가 특정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 특정법인(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B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B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갑의父)가 A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기준의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2020.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2020.02.14.

B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B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갑의父)가 A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기준의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2020.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 특정법인(결손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개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특정법인(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제과-324, 2020.03.24

### | 질의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급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급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2319, 2020.03.03

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재산세제과-297, 2020.03.24

### ■ 질의

- 제조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축물을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등으로 보상받은 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또는 토지(환지)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 및 오염토지의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사업자의 비용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오염토양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실시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후 종전 토지는 환지처분 받고 건축물과 영업손실 보상금은 체비지 또는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환지처분 받은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

### ■ 질의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

### ■ 회신

내국법인이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에 의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끝



## 노력해도 납부 못 하는 생계형 체납자… 징수유예 신청 가능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2023년까지 징수유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징수유예 대상이 되려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2022년 사이 1개월 이상 창업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을 하는 등 생계를 잇기 위한 노력 흔적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체납세금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준법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한 신청자는 가산금을 면제받고 체납 세금도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체납세금 징수특례를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정철우 국세청 장세법무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곳간 닫은 대기업에 8천억원대 과세… 재벌 집중”

대기업이 이익잉여금을 투자나 임금인상,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아 부과받은 세금이 지난해 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표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투자·상생 협력촉진세’ 납부를 신고한 기업은 978개였으며, 과세액은 8천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일반 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10조원 이상)이 이익을 ▲ 유무형자산 투자 ▲ 임금 인상 ▲ 상생협력 출연금·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에 사용하지 않을 때 과세(세율 20%)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영업 이익을 쌓아두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에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으로 재분배하라는 목적의 세제다.

문재인 정부 첫해 ‘상생’에 초점을 맞춰 기존에 인정하던 배당을 제외해 재설계, 201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 세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책 목적이 달성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세액이 매년 늘어나며 오히려 목적 달성이 멀어지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업이 새로운 투자로 한국판 뉴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고액체납 도망갈 곳 없다”… 국세청 신규조직 가동 월 1900억원씩 적발

올해 들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월간 실적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신규 편성하고, 고액체납자 주출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기동하는 등 좀 춤한 포위망을 가동하고 있다.

국세청 월 평균 추적조사 실적은 2015년 1322억원, 2016년 1385억원이었다가 2017년 1491억원, 2018년 1567억원, 2019년 1689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8월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징수한 실적은 1조50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16억원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평균 실적은 18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40억원 증가했다.

현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체납자 추적 조사 실적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정철우 국세청 장세법무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 2020. 10

## 【 분석 요약 】

- ◆ (분석 결과)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2.5%\*로 전기 내부회계 검토 결과 비적정의견 비율(1.9%) 대비 소폭 증가(0.6%p↑)
  -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156사는 적정의견이, 4사는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이 표명됨
- 당초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평가
  
- ◆ (시사점)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20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22년), 1천억원 미만('23년)
  - ⇒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한공회, 상장 협·코협, 회계법인 등)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내부회계 관련 FAQ 및 교육컨텐츠 확대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
- 한편,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
  - \*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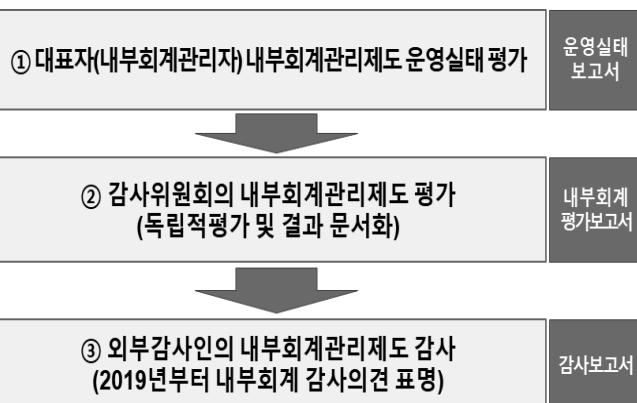
## I

## 개요

- ◉ (배경)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 상장법인은 외감법에 따라 '05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 왔으며, 新 외감법 시행으로 '19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환
  - \* 2조원 이상('19년), 2조원~5천억원('20년), 5천억원~1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 ◉ (분석대상)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 후 내부회계 감사가 첫 시행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160사)을 대상으로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및 중요 취약점 유형을 분석하고
- 제도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이슈 등을 점검하여 내부회계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사점 및 유의사항을 안내

## &lt;참고&gt;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 체계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는
  -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설계·운영·평가·보고)
  - ②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독립적평가 및 결과 문서화)
  - ③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등  
→ 3단계로 진행됨



## II

## 분석결과

## 1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 ◉ (의견현황)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적정 의견 비율은 97.5%임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상장법인 160사 중 156사는 적정의견을, 4사는 비적정의견(중

요한 취약점 발견)을 받음

- 비적정의견을 받은 4사 중 2사는 전기(검토의견)에도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음

◆ 중요한 취약점(MW : Material Weakness)

- ※ 외부감사인은 중요한 취약점을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포함하여 의견을 표명
- 하나 또는 복수의 통제미비점의 결합으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 중요한 취약점 발견 시 회사의 내부회계를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음

- ◉ (의견추세) 당초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내부회계 감사 결과 적정의견 비율(97.5%)은 전기 검토 결과 적정의견 비율(98.1%)과 유사한 수준

\*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적정의견 비중 : '18년 98.1%(검토의견), '19년 97.5%(감사의견)

- 이는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것에 기인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현황

구 분	2018년(검토)	2019년(감사)
적정(취약점 X) (비율)	157 (98.1)	156 (97.5)
비적정(취약점 O)	3	4
합 계	160	160

- ◉ (미국 사례 비교)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첫 해('04회계연도)의 비적정의견 비율이 15.7%에 달하였고,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도 6.0%로 높은 수준

- 다만, 우리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 이므로 미국 사례와 단순 비교는 무리
  - 향후 중소형 상장법인으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 현황**

- ◉ (평가현황)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을 분석한 결과,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159사는 중요한 취약점 없이 내부회계가 적정하게 운

영된 것으로 평가

-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에 대해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표명한 회사(4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에서 1사만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

### 3 중요한 취약점 유형

- ◉ (중요한 취약점)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4사는 손상인식, 리스회계, 충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
- 이는 내부회계 모범규준에서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과 '전기오류'를 중요한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에 기인

비적정의견 사유 : 중요한 취약점

구분	유형	세부내역
중요한 취약점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손상 관련</li> <li>-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 관련</li> </ul>
	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 회계처리 관련</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단체)과 체결한 약정사항 인식 관련</li> <li>-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정확성 검토 관련</li> <li>- 소송충당부채의 측정 관련</li> <li>- 항공기 정비비용(유형자산, 미지급비용) 인식 관련</li> </ul>

- ◉ (미국 사례 비교)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만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한 반면,
-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환경 구축 미흡, 회계인력이나 경영진의 전문성 미비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약 60%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이는 결산 관련 통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본질적 통제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업무분장 등)의 취약점까지 치유되어야 한다는 Top-Down 평가방식을 적용한 것에 기인

**美**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사유 및 비중('18회계연도 기준)

비적정의견 사유(중요한 취약점)	회사 수	비중
재무제표 작성·공시 관련 프로세스 통제 취약	180사	36.8%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	288사	58.8%
내부감사 미비	10사	2.0%
경영진의 전문성 등 취약	5사	1.0%
기타	7사	1.4%
합 계	490사	100.0%

#### 4 재무제표 감사와의 관계

- ◉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받은 4사를 포함한 160사 모두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표명됨
- 재무제표 감사 시 발견한 결산오류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 반영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되나,
  - 동 결산오류가 내부회계 모범규준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된 경우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의견이 표명됨
- 재무제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현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

### III

## 시사점 및 유의사항

###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 평가 필요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문서화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 '19회계연도에 내부회계 감사를 받은 상장법인 대부분\*은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와 동일한 취지의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을 공시
      - \* 외부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4사 중 1사만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이 비적정(나머지 3사의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은 적정)
    - 한편, 금감원 설문조사\* 결과 대형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 직할부서를 통해 평가를 지원하는 회사는 37.1%로 낮은 수준
  - \* 설문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5사 중 39사(37.1%)가 감사위원회 직할부서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회신
-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는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평가업무 수행 시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내부회계에 대한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

### ② 내부회계 주요 취약점은 재무제표 오류 또는 결산통제에 편중

-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4사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만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
-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환경 구축 미흡, 회계인력이나 경영진의 전문성 미비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약 60% 수준('18회계연도)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 내부회계의 목적 및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와 감사인 모두 결산통제에 대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내부회계의 본질적 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고 평가할 필요

### ③ 정보이용자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에 유의할 필요

-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 산출과정에 대한 내부통제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어 감사의견이 변형된 경우,
  - \* 회사의 현내부회계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정보이용자는 중요한 취약점의 의미와 회사가 공시\*한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 개선계획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에 유의할 필요
  - \*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개선계획·이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공시

- ▶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

### ④ 감독당국은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

-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2.5%\*로 다소 낮은 수준
  - \* 미국은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직후인 '04회계연도에 ICFR에 대한 비적정의견 비율이 15.7%에 달하였고,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은 6.0% 수준
- 대형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평가
- 반면,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20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한공회, 상장협·코협, 회계법인 등)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
  - \* 내부회계 관련 FAQ 및 경영진 대상 교육콘텐츠 확대 제공, 정보공유 확대 등

## 불임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 ◉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19년부터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 \* 감사의무화 시점 : '19회계연도(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 '20년(5천억원~2조원) → '22년(1천억원~5천억원) → '23년(1천억원미만)
- (검증대상)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하지만,
  - \*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계획,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 (수행절차)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하는 반면,
  -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하거나 회사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9월 28일(월)	9월 29일(화)	10월 5일(월)	10월 6일(화)	10월 7일(수)
미 달 러 (USD)	1170.50	1173.50	1169.50	1163.40	1160.00
일 본 엔 (JPY)	1108.59	1112.06	1108.48	1100.19	1098.22
영 국 파 운 드 (GBP)	1493.27	1507.42	1511.87	1510.67	1494.02
캐 나 다 달 러 (CAD)	874.65	877.91	879.42	877.18	870.90
홍 콩 달 러 (HKD)	151.03	151.42	150.90	150.11	149.68
위 안 화 (CNH)	171.57	171.90	171.37	172.58	172.52
유 로 화 (EUR)	1361.58	1369.42	1370.19	1371.01	1361.14
호 주 달 러 (AUD)	824.09	831.31	837.89	836.08	823.66
싱 가 폴 달 러 (SGD)	850.25	855.35	857.50	855.35	851.00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80.59	281.04	280.83	280.17	279.28

#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 국세청, 2020.10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추적조사 대상)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하겠습니다.
- (추적조사 성과)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 올해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 징수·채권확보 : ('19.1~8월) 13,139억 원 → ('20.1~8월.) 15,055억 원 (1,916억 원 ↑ )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습니다.

|

## 추진 배경

-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해왔으며,
  - 올해부터는 세무서에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숨진재산을 추적하고,
-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탐문 방식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II

##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혐의자 812명 추적조사 학수

- ◆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합니다.
-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번 추적조사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붙임1)

합 계	〈유형1〉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	〈유형2〉 타인명의 위장사업	〈유형3〉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812	597	128	87

- (유형1 :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
- (유형2 : 타인명의 위장사업)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 장소에 동일(유사) 업종으로 재개업하여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
- (유형3 :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 ◆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하여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 친인척 금융조회 개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

◇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② 6촌 이내 혈족 ③ 4촌 이내 인척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허용

- 아울러,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여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우려가 큰 만큼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비대면 추적조사를 추진하되
  - 부득이하게 수색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III

### '20년 8월까지의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성과 및 사례

- ◆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체납전담직원 1,912명)을 통해 고액체납 근절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 '20.1월 세무서에 '체납징세과'('체납추적팀 포함')를 신설하여 체납액 징수 강화

- 현재까지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조 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으며,
  -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성과를 거 얉하였습니다.

\* 수색으로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명품가방 등을 확보

〈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 〉

구 분	징수·확보(억 원)			소재기 (건)	범칙처분 (명)
	계	현금징수	채권확보		
'18년(①)	18,805	9,896	8,909	369	258
'19년(②)	20,268	10,908	9,360	454	341
증 감(②-①)	1,463	1,012	451	85	83

'19.1~8월(③)	13,139	7,389	5,750	274	230
'20.1~8월(④)	15,055	7,929	7,126	449	290
증 감(④-③)	1,916	540	1,376	175	60

- 특히,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정확성 검증(표본점검 : pilot test)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한 결과,
    -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장소와 일치<sup>\*</sup>하였으며 12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법으로 고발하였습니다.
- \* 빅데이터에 의한 실거주지 분석적중률 : 85.7%(28명 중 24명 일치)

**IV****향후 계획**

-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 ◆ '21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감치대상자 요건 (국세징수법 제7조의5) >**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감치 신청
    - 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 ②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 ③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 최대 30일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

※ 법령은 '20.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20년 이후 체납이 발생하여 1년 이상 경과하는 '21년 이후 감치대상자가 최초 발생

- ◆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

## ◇ 대상자 요건(①,②,③,④) 모두 해당)

- ① '19.12.31. 이전에 개인사업을 모두 폐업(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한 자
- ② '20.1.1.~'22.12.31. 개업(1개월 이상 계속사업) 또는 취업(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 ③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④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 징수특례 내용

- 무재산 등으로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분할 납부 승인(최대 5년간)

## ◇ 신청방법

- 관할세무서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개업 또는 취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출(신청 기간 : '23.12.31.까지)

## V

## 기타 안내사항

##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은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인터넷, 모바일)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명단공개된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된 공개자료를 쉽게 확인 가능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http://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 ■ 모바일 : 모바일 국세청(어플) »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바로가기)

## ◆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http://www.nts.go.kr))
  -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붙임 1****체납추적조사 선정사례****사례 1 체납발생 즉시 동거인에게 유일 재산을 편법 이전하여 재산은닉**

## ◆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 (사실관계) 체납법인의 대표인 체납자 A는 법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이후, 제3자 B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 발생
- (회피혐의) 주민등록 변경 이력, 소득·지출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동산 양수자인 B는 A의 과거 동거인이었으며, B의 소득 대비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점을 확인
  - A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B와 통정하여 유일한 부동산을 편법으로 명의만 이전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 ◆ 체납추적조사 방향

- A와 B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체납자 거주지 수색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을 허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A와 과거 동거인이었던 B(방조범)를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체납처분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



## 사례 2

체납 이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

◆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 (사실관계)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A는 고액의 체납 발생 이후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였고, 이후 동일 장소에서 의류임가공업으로 A의 처남인 B가 사업자 등록 후 사업 영위
- (회피혐의) 친·인척 내역,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A와 B 각 사업자의 주 거래처가 동일하고, B의 근무지 등 생활환경이 사업장 외 장소로 확인
  - A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B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 체납추적조사 방향

- A와 B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로 B의 사업자금 출처, 수입금액 귀속 확인하고, 주 거래처에 대한 질문·검사권을 통해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A가 B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자 명의를 A로 변경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A와 B(방조범)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체납처분 행위에 엄정 대응

## 사례 3

체납자 친·인척 명의로 외환자금을 송금하여 해외에 재산은닉

◆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 (사실관계) 체납자 A의 체납 발생 전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동생 B가 사업대금 결제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
- (회피혐의) 친·인척 내역, 소득·지출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 거래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가 소득에 비해 과다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 확인
  - A가 B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 체납추적조사 방향

- A와 B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으로 B의 해외자금 송금 사유와 자금 원천 등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A가 B 명의로 자금을 해외로 은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A와 B(방조범)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외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국가 간 징수공조를 진행하는 등 체납처분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

## 불임 2 수색 실시사례

### 사례 1 은닉재산 신고로 호화생활이 확인된 명단공개 체납자

#### ◆ 혐의사항

- 체납자는 명단공개자('17년)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

#### ◆ 추적조사 실시

- 현장탐문 결과 체납자 및 배우자의 주소지에는 체납자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타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며 경기도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 탐문 활동으로 체납자가 타인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에 대한 수색 실시

#### ◆ 추적조사 결과

-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화(미화 1만 달러) 및 명품시계(5점), 그림(5점) 등 약 1억 원 상당을 압류

### 사례 2 양도대금을 천만 원 권 수표 수십 장으로 은닉한 체납자

#### ◆ 혐의사항

- 고령의 체납자가 양도가액 대비 은행 채무액이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

#### ◆ 추적조사 실시

-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을 위해 양수인에게 질문 · 검사권을 실시하여 체납자에게 양도 대금을 1천만 원 권 수표 수십 장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
- 수표 발행은행에 수표 지급 사실 확인을 거쳐 미지급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거주지 수색을 실시

#### ◆ 추적조사 결과

- 가택수색에 흥분한 체납자를 진정시킨 후, 서랍장에서 1천만 원 수표뭉치를 발견하여 총 3.2억 원(1천만 원 권 32장) 징수



### 사례 3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체납자

#### ◆ 혐의사항

-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게 중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
- 빅데이터 분석결과 세대 전원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시골 고향 집으로 전입하였으나,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 ◆ 추적조사 실시

- 금융조회를 활용한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양도대금 4억 원을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탐문·잠복으로 가족 모두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

#### ◆ 추적조사 결과

- 수색을 통한 현금 1억 원 등 체납액 5억 원을 전액 징수하고, 체납자와 배우자(방조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

### 사례 4 호화생활을 영위 중인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 ◆ 혐의사항

- 체납자는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왕성히 활동 중이나,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

#### ◆ 추적조사

-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 및 수차례 미행·탐문 결과 체납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분당 주상복합 아파트(88평)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해 동시 수색 실시

#### ◆ 추적결과

- 사업장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백만 원과 집안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약 2억 원 상당을 압류

#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2020. 9

- (착수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
  -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
  -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 1

### 배경

-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를 적기에 검증함으로써
  - 정당한 세금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2

## 조사대상자 98명

-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대상 선정 현황]

(단위 : 명)

합 계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자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외국인 30명 포함)
98	10	12	76

\* 30대 이하(만 39세까지)

①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 등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혐의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부동산 투자자가 다주택 취득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타인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한 후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 법인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00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았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1 참조)
- ◇ 연소자가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중여 받아 주택투자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매년 ○ 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②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자

-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현금을 중여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이후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를 현물출자하고 배우자(A)가 소유한 아파트를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를 가장해 중여 받은 혐의

-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미미한 근로자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액을 출자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바 아파트 취득자금 및 법인설립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

③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이하 연소자 중 주택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외국인 30명 포함)

-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소규모 법인 대표로 연소득이 0천만원에 불과한 연소자가 수채의 주택을 00억원에 취득하고 연 0억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바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 30대 임대업자가 00채의 주택을 00억원에 취득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이 0천만원에 불과하고 소득이 미미하여 주택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

◦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중

–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 국내에서 수년 째 거주 중인 외국인(한국계)이 고가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 받은 혐의 및

•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 3

###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위법 사항 조치

●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1)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2)됨에 따라

1) '20.3.13.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부여

• 9월말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거래로 확대 예정

2) '20.3.13.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9월말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체 주택거래로 확대 예정

-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 및 법인 등에 대하여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여

-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4 주요추징사례

-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①

#### 주민 모임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적출

- ◆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들이 다수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조사한 결과
  -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 확인
  - 양도소득세 추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 통보

### 사례 ②

####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증여 사실 은폐

- ◆ 관계기관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관련자로서 신고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결과,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전 거주지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
  - 증여세 0억원 추징

### 사례 ③

#### 타인 명의로 사업하면서 신고 누락한 소득으로 다수 아파트 취득

- ◆ 사업자가 신고 소득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운영하던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및 허위 대여금 회수\*를 통해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확인
    - \* 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조작하고 대여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법인자금 유출
  - 소득세 및 법인세 등 00억원 추징

## 5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 \*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설치하고, 7월에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탈루혐의 정보 수집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함으로써
-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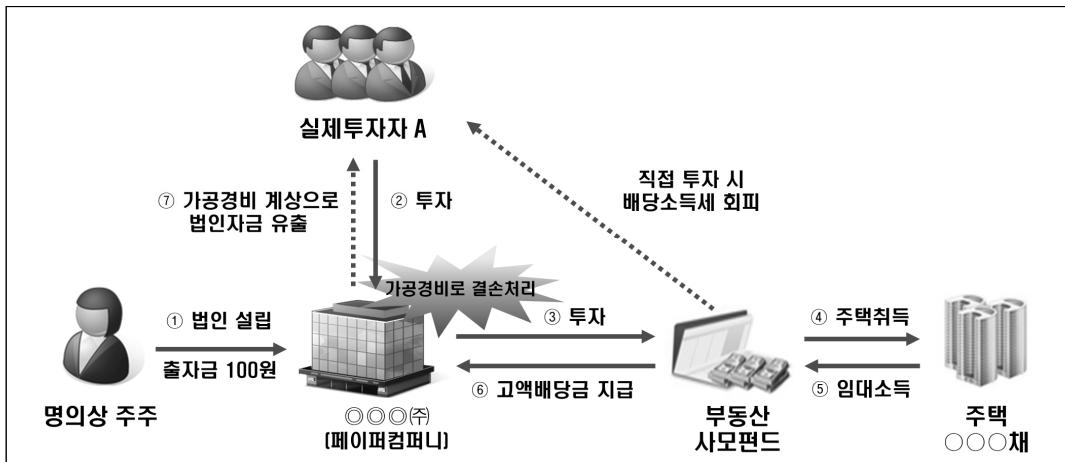
### 붙임 1 -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 1**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

#### ● 인적사항

- 법인명 : 주)○○○
- 소재지 : △△시

#### ● 주요 혐의내용



- 투자자 A는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거액(00억원)을 투자하고 법인 명

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00억 원)

-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00억 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응하는 00억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 투자자 A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

#### ● 향후 계획

- 가공경비 계상 등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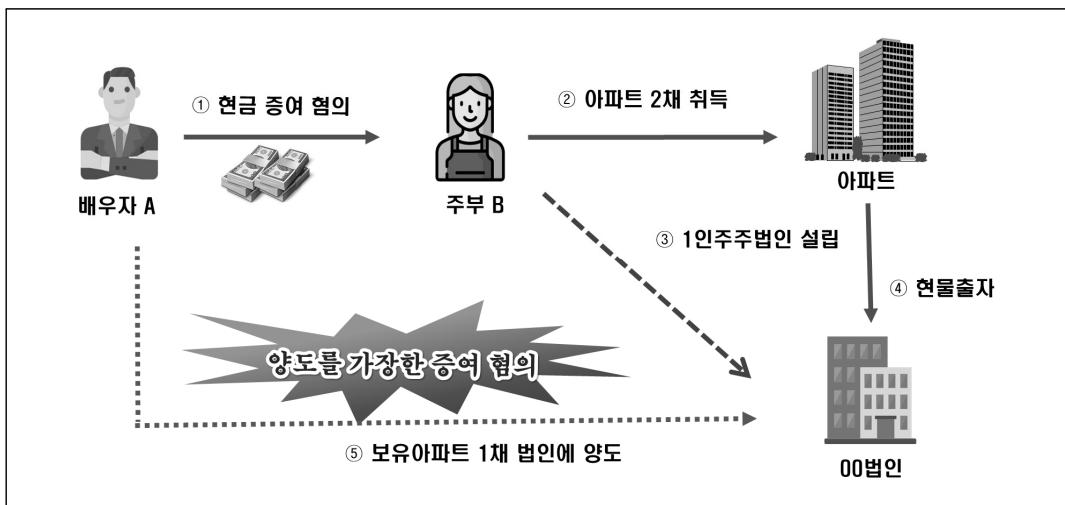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 한

사례 2 혐의 및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 하고 동 법인을 이용해 남편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 받은 혐의

#### ● 인적사항

- 증여자: 배우자 A
- 수증자: 주부 B
- 주 소: ○○시

#### ● 주요 혐의내용



-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취득한 혐의
  - 전업주부B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
- 또한, 배우자A는 소유 아파트를 상기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를 가장해 B에게 증여한 혐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 · 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

● 향후 계획

- 취득자금 수증 및 양도를 가장한 우회증여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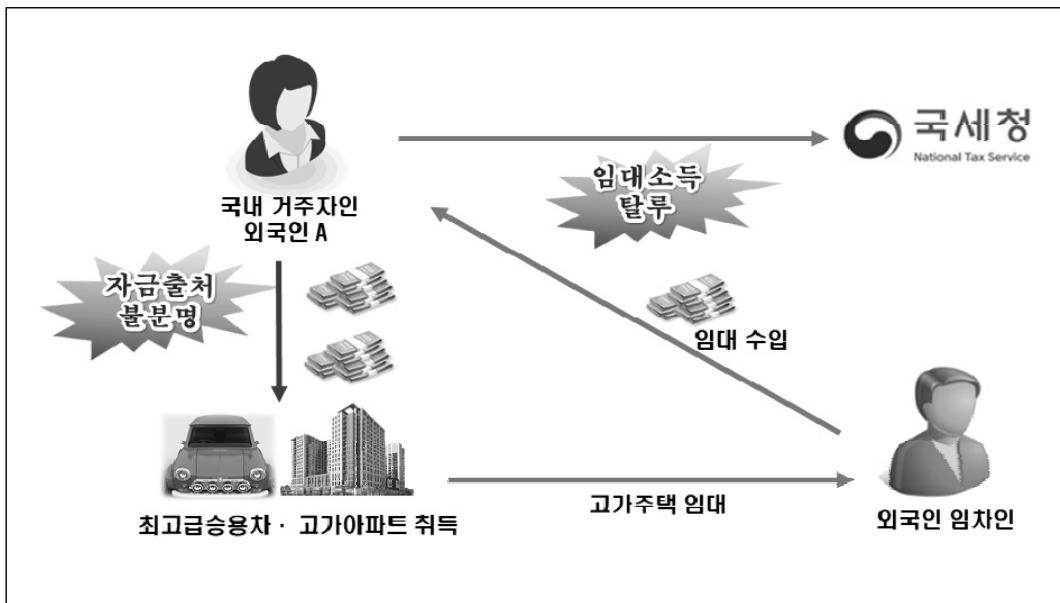
사례 3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고가주택 및 최고급 승용차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 불분명

● 인적사항

- 수증자: 외국인 A
- 주 소: ○○시

● 주요 혐의



- 검은머리 외국인 A(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 \*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 향후 계획

- 취득자금 수증 및 임대소득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 불임 2 -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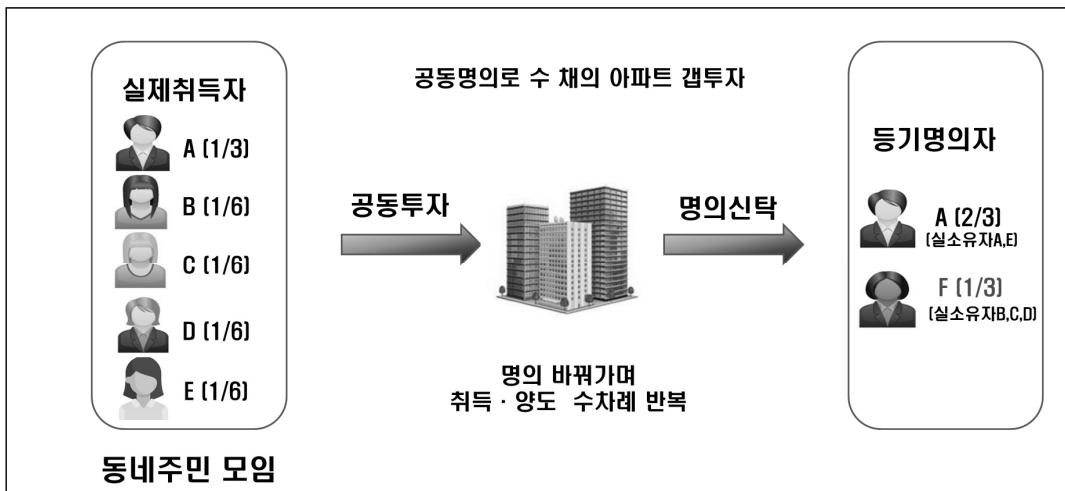
사례 1

같은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자본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아파트·분양권을 타인명의로 거래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 인적사항

- 다수부동산 취득자 : 지역 주민모임
- 주 소: ○○시

● 주요 혐의내용



-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과의 다수 아파트 공동취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이를 검증한 결과,
-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 확인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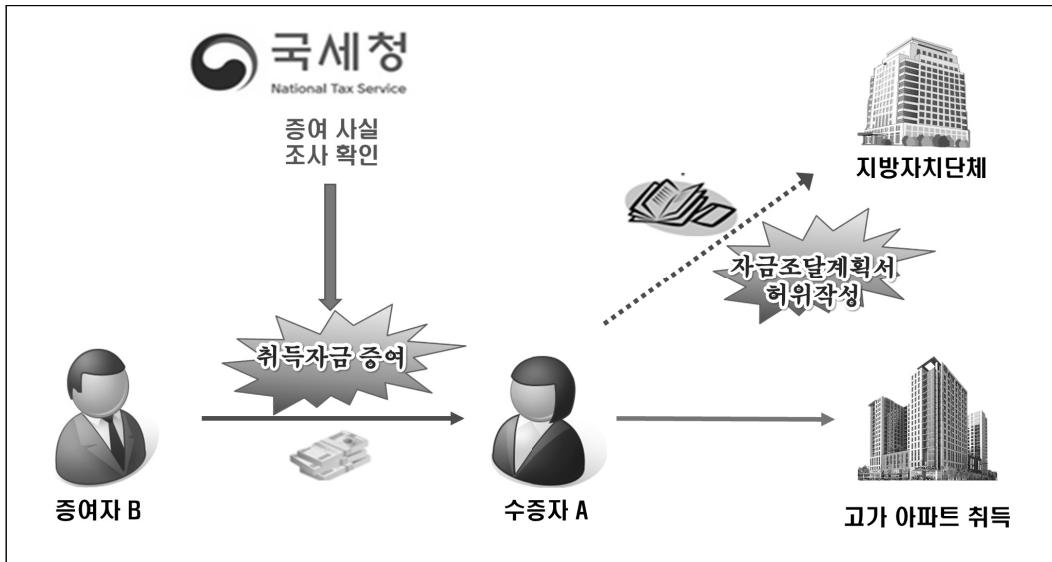
- 양도소득세 추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계기관 통보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사례 2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증여 사실 은폐

### ● 인적사항

- 수증자: A
- 주 소: ○○시
- 증여자: B

### ● 주요 조사내용



-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관련자로서 신고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 결과, 지인으로부터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전 거주지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

### ●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억원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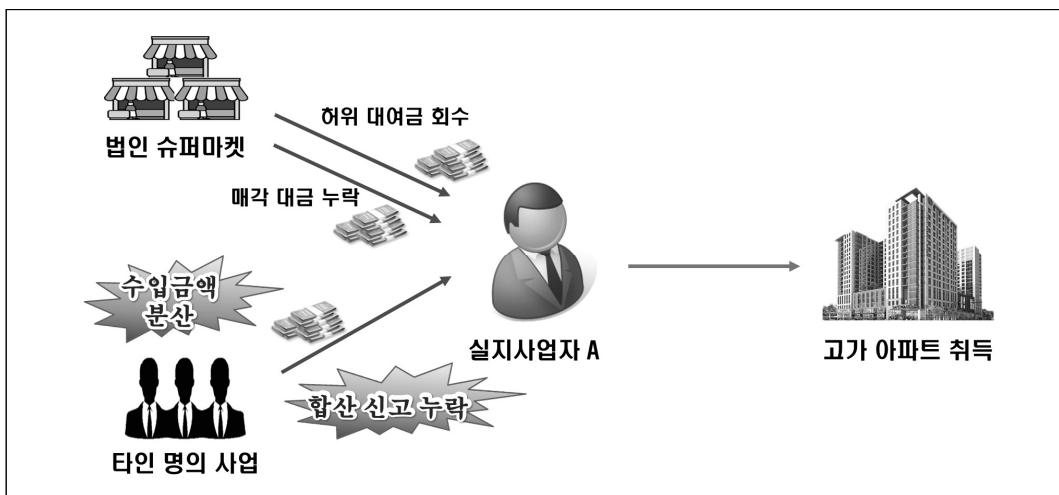
사례 3

사업자 A는 타인명의로 사업하면서 신고누락한 소득과 법인 매각자금 및 허위 대여금 회수 등으로 다수 아파트 취득

● 인적사항

- 고가 부동산 등 취득자: 실지사업자 A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신고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선정
- 조사 결과,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 신고누락 ○억원, 운영하던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억원, 허위 대여금 회수 ○○억원 등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명의대여 소득 합산누락 소득세 ○억원 및 법인 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 허위대여금 계상 법인세 ○○억원 추징

#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 2020. 10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 이번 기간 동안 방송,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 매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필요성 및 혜택을 알려 「위기 시 사회보험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업장들의 휴업(폐업)으로 인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 ~ 90%까지 정부가 지원
  -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구로구청
    -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대전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협료 지원 신청은 편리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으로 가능하다.
  - 공단 콜센터로 문의 [☎ 1588-0075 + (바로가기01)] 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면서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 “공단은 노동복지허브로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지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붙임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도

---

###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 1. 고용보험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고유번호증은 가입 불가)
-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노동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단,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2천 만 원 미만 등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2. 고용보험 주요 혜택

##### ●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실업급여 지급일수)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월1,092천원 ~ 2,028천원)을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지급

가입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일배움카드제)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체납자 제외)
- 훈련과정 및 지원금
  - 일반 노동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 훈련비용의 60%~100% 지원(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폐업 이후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20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95% 지원(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
- (내일배움카드 신청) HRD-Net ([www.hrd.go.kr](http://www.hrd.go.kr)) 또는 고용센터
  - \* 훈련과정 검색: HRD-Net > 직업훈련정보 > 노동자훈련과정

### 3. 고용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실업급여 보험료) 기준보수 × 보험요율(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기준보수 × 보험요율(0.25%)

● (보험료 납부)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등급	기준보수	고용보험료(월)			실업급여(월)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0.25%)	합계 (2.25%)	
1등급	1,820,000원	36,400원	4,550원	40,950원	1,092,000원
2등급	2,080,000원	41,600원	5,200원	46,800원	1,248,000원
3등급	2,340,000원	46,800원	5,850원	52,650원	1,404,000원
4등급	2,600,000원	52,000원	6,500원	58,500원	1,560,000원
5등급	2,860,000원	57,200원	7,150원	64,350원	1,716,000원
6등급	3,120,000원	62,400원	7,800원	70,200원	1,872,000원
7등급	3,380,000원	67,600원	8,450원	76,050원	2,028,000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 ▣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가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30~50%)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지원수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일부\* 지원
  - \* 1~2등급 : 50%, 3~4등급 30% 지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go.sbiz.or.kr),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2.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제도****1. 산재보험 가입대상**

- (노동자 사용)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노동자 미사용)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2. 산재보험 주요 혜택****● 업무상 재해 보상**

-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산재보험급여**

구분	산재보험급여 내용
요양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li><li>○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li><li>○ 이송료: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 비용</li><li>○ 기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li></ul>
휴업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li></ul>
상병보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li></ul>
장해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li></ul>
간병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li></ul>

직업재활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장해인(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li> <li>◦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1급~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li> </ul>
유족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li> </ul>
장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체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li> </ul>

### 3.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기준보수1)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2)

- 1)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1~12등급) 중 선택
- 2) 중 · 소기업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재해 요율 1.3/1,000 포함)

구분	기준보수액(월)	* 보험료 예시 (도소매업/음식업 기준)	평균임금(일) [보상 기준]
1등급	2,061,600원	19,170원	68,720원
2등급	2,480,301원	23,060원	82,677원
3등급	2,899,002원	26,960원	96,633원
4등급	3,317,703원	30,850원	110,590원
5등급	3,736,404원	34,740원	124,547원
6등급	4,155,105원	38,640원	138,504원
7등급	4,573,806원	42,530원	152,460원
8등급	4,992,507원	46,430원	166,417원
9등급	5,411,208원	50,320원	180,374원
10등급	5,829,909원	54,210원	194,330원
11등급	6,248,610원	58,110원	208,287원
12등급	6,667,320원	62,000원	222,244원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20년도)

(단위: 천분율)

사업 종 류	요율	사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 · 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업	28
출판·인쇄·제본업	10	8. 농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불임2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강원도	'18. 1. 1.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li> <li>- 시군 일자리부서로 우편신청</li> </ul>	강원도 콜센터 (☎ 033-120)
충청남도	'1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행정복지센터</li> <li>- 천안시: 시청, 서북구청, 동남구청</li> <li>- 아산시, 계룡시, 청양군: 시·군청</li> </ul>	충남도청 콜센터 (☎ 041-120)
전라북도	'20.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담당부서(읍·면·동) 홈페이지, FAX, 방문 (시, 군에 따라 다름)</li> </ul>	시·군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부서
제주도	'19. 1. 1.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액 중 최대 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청 일자리과 방문 또는 FAX(064-710-4420) 신청</li> </ul>	제주도청 일자리과 (☎ 064-710-3794)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보험구분	지원 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경상남도	고용	18.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40%(3년)</li> </ul>           ('20년 한시적으로 40%, 이후 년도는 30% 지원)         </li> </ul>	경남도청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검색▶사업 공고문에서 서식다운▶방문, 등기우편, 팩스, e-mail(soaya @ korea.kr)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 055-211-3416, 팩스 055-211-3419
	산재	2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등급: 보험료 60%(2년)</li> <li>• 5~8등급: 50%(2년)</li> <li>• 9~12등급: 40%(2년)</li> </ul> ('20년 한시적으로 10% 추가, 이후는 50~30% 지원)		
대전시	고용	1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등급(신규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30%(1년)</li> </ul> </li> </ul>	대전비즈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검색▶서식 다운▶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대전경제통상진 홍원 서민경제지원팀 (☎ 042-380-3082)
서울시	고용	1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30%(3년)</li> </ul> </li> </ul>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사업안내▶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하단 신청하러 가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6119), 서울다산콜센터 (02-120)
강원도	고용	1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등급: 보험료 40%</li> <li>• 3~4등급: 50%</li> <li>• 5등급: 70%</li> <li>• 6등급: 60%</li> <li>• 7등급: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 일자리정보망▶일자리지원▶지원 사업신청▶사회보험료 지원▶안내내용 상세보기▶신청하려 가기</li> </ul>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 033-249-3933, 3929)
	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5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시·군 일자리부서로 우편 신청</li> </ul>	

경 기 도	고용	'2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등급 - 보험료 30%(3년)</li> </ul>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신청하기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 소상공인팀 (☎) 031-303-1672)
부 산 시	고용	'2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등급 - 보험료 50%(1년)</li> <li>• 5~8등급: 40%(1년)</li> <li>• 9~12등급: 30%(1년)</li> </ul>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기타 지원사업▶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051-600-1777)
	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등급 - 보험료 30%(1년)</li> </ul>		
전 라 북 도	고용	'20.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등급 - 보험료 30%(10개월)</li> </ul>	전북도청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 사업공고문」 검색▶서식 다운로드 ▶팩스 (063-280-3259), 이메일 (hyoseonyOO @ korea.kr), 문자 (010-2840-2300), 민원실 방문 신청	전북도청 일자리 경제정책관 (☎) 063-280-3257)
	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2등급 - 보험료 50%(10개월)</li> </ul>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1~2등급 50%(3년), 3~4등급 30%(3년)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서울 구로구 청	'20. 5. 1. (최대 6개월), '20.5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5. 1. 이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사업장 중 두루 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고용, 국민) 신규가입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금 중 정부 지원금(80~90%)을 제외한 금액</li> </ul>	구로구청 홈페이지▶팝업창 「고용보험료지원사업」 공고▶접수하기	구로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02-860-2855)